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

확정 지급명령 · 한 은행의 가상 계좌 · 신청서와 별지, 추심 후 행동 구별

이 예시가 전제하는 사건

채권자 김가람은 채무자 이다온에 대한 원금 10,000,000원의 확정 지급명령을 가지고 있고, 변제받은 금액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 교육용 예시는 **이자·독촉절차비용·집행비용을 신청 청구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가상은행 주식회사가 채무자의 거래은행이고, 채무자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 하나가 알려졌다는 가정으로 별지 기재 위치를 보여줍니다. 계좌 잔액은 알지 못합니다. 공개 원본의 '계좌번호도 모른다'는 전제보다 좁은 사례이며, 계좌번호를 모르는 사건에 이 표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래 이름·은행·주소·계좌·사건번호는 모두 가상 표시입니다. 실제 법원·은행·계좌와 일치하는 자료로 바꾸어 제출해야 합니다. 생계비계좌와 일반 예금의 압류금지 범위, 선행 압류·상계·질권 및 지급명령의 집행 가능 상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과 그 전 사건은 적용 기준을 구별합니다.

신청서 문안 예시 - 아래 구역만 가상 제출문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권자 김가람 / 주소: [가상 주소: 서울특별시 예시구 가상로 10]

채무자 이다온 / 주소: [가상 주소: 서울특별시 예시구 가상로 20] / 주민등록번호: [실제 제출 전 확인·기재]

제3채무자 가상은행 주식회사 / 본점 및 송달주소: [가상 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예시구 가상로 30]

집행권원: [가상 사건번호: 2026차전0000] 확정 지급명령 정본. 실제 제출 시 법원·사건번호·당사자·송달 및 확정 상태를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확정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하지만, 조건부 집행 또는 당사자 승계가 있으면 집행문 필요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청구금액: 금 10,000,000원. 이 가상 청구금액은 미지급 원금만 포함하며 이자·독촉절차비용·집행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청취지

1. 채무자 이다온이 제3채무자 가상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1 기재 보통예금 반환채권 중 금 1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부분**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신청이유

채권자는 위 확정 지급명령에 기재된 원금 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1 기재 예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이 가상 예시는 실제 예금 잔액이나 다른 권리의 존재를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첨부자료 기재란 예시 - 이 PDF에는 실제 증명서·결정문이 첨부되지 않음

1. 집행에 사용할 지급명령 정본과 필요한 송달·확정 자료 [실제 문서명·발급일 확인]
2.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를 특정하는 자료 [실제 자료명 확인]
3. 별지 1 기재 거래은행·계좌 정보를 대조할 자료 [실제 자료명 확인]
4. 일부 변제·기존 집행이 있으면 이를 반영한 청구금액 계산자료 [해당할 때 작성]

2026년 [가상 월] [가상 일]

채권자 김가람 (서명 또는 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실제 제출 전 기재]

[채무자 보통재판적을 확인한 관할 지방법원] 귀중

별지 1 -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상)

항목	이 가상 예시의 표시	실제 제출 전 대조
제3채무자	가상은행 주식회사	실제 금융기관의 정확한 법인명·송달주소
채무자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자리표시 - 실제 번호 아님]	실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별지에 기재
예금채권	채무자 이다온 명의의 보통예금 반환채권	실제 은행·채무자·계좌 명의·예금 종류
계좌 구별	[가상 계좌표시: 000-000-0000]	실제 계좌번호와 확인자료; 모르면 별도 특정 방식 검토
압류 범위	위 예금반환채권 중 청구금액 1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	실제 미지급 원금·부대채권·비용과 중복집행 여부

이 별지는 **가상 계좌 한 건**만 나타냅니다. 법원 공개 양식의 예금 별지 주기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공개 예시에는 실제 번호를 넣지 않았으며, 개인정보를 홈페이지나 공개 댓글로 보내지 마세요. 여러 계좌·여러 종류의 예금·여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면 대상과 금액 배분을 다시 특정해야 합니다. 이 표의 순서는 압류 효력 발생 순위나 은행의 지급 순서가 아닙니다.

독자 설명 - 위 가상 신청서의 일부가 아님

- **집행권원과 금액을 먼저 대조:** 민사집행법 제225조는 압류명령 신청에서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합니다. 제58조 제1항에 따라 확정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하되, 조건부 집행이나 당사자 승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확정·송달과 예외 사유를 실제 사건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 예시는 이자·비용을 빼고 원금만 청구한 가정이므로 모든 사건의 청구액 산식이 아닙니다.
- **계좌를 모르는 사건을 혼동하지 않기:**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금융기관과 예금채권의 종류·범위를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는지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예시의 가상 계좌표시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모든 계좌'라고만 쓰면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예금 종류가 여러 개면 충당 순서·중복 범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법원 안내와 해당 별지를 별도 대조합니다.
- **압류와 실제 추심은 별개:**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에는 생계비계좌 예금과 별개로, 일반 예금 등의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 압류금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 예금 보호액은 압류금지 현금이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조정됩니다. 실제 잔액·선행 압류·상계·질권도 회수액에 영향을 줍니다. 결정문만으로 돈이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 **추심 후 신고:** 채권자가 실제로 추심하면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라 추심한 채권액을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심금을 배당받을 다른 채권자와 **실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압류·가압류의 제3채무자 송달시각, 은행의 추심금 지급시각, 적법한 배당요구의 유무를 사건기록에서 대조합니다. 지급 후에 비로소 송달된 다른 압류·가압류나 단순한 신청만으로 이미 지급된 추심금에 경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제출 전 대조:**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의 당사자·신청취지·청구채권·신청이유·첨부서류·서명·연락처·별지 예시 기재란을 대조했습니다. 다만 이 교육용 예시는 계좌 한 건을 가정해 재구성한 것이며 공식 양식을 복제한 서류가 아닙니다. 법원 양식의 인지·송달료 등 수치나 예시는 접수 시점에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PDF에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 관할, 제3채무자 송달주소, 압류할 채권 표시, 청구액·집행서류, 필요한 인지·송달료, 서명 방식은 실제 제출 때 다시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검토 범위

- 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www.law.go.kr)
-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224조(집행법원),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제236조(추심의 신고) (www.law.go.kr)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9호(압류금지채권) (law.go.kr)
- 민사집행법 법률 제20733호 부칙 제1·2조(시행일·적용례) (www.law.go.kr)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law.go.kr)
- 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6호 부칙 제1·2조(시행일·적용례) (www.law.go.kr)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추심금 지급 후 송달된 압류의 효력) (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금전채권 강제집행 안내와 양식 목록 (help.scourt.go.kr)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HWP 원본(양식 목록에서 내려받아 내부 기재란 대조) (jifi.scourt.go.kr)